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5호
------	---------

발의연월일 : 2025. 1. 21.

발 의 자 : 구형서, 안종혁, 이종화,
안장현, 이정우, 김도훈,
박정식, 이연희, 이철수,
홍기후, 김응규, 이현숙,
정광섭, 윤희신, 전익현,
방한일, 신영호, 김옥수,
편삼범, 박기영, 김석곤,
박정수, 정병인, 오안영,
최광희, 신순옥, 윤기형,
이용국 의원(28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4조)
- 나. 공공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표준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관부서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다.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데이터 현행화 및
공공데이터책임관의 데이터 검증·승인 책임을 명시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2023. 11. 17.)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5.1.8., 여성가족정책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5.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2.31.,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

제11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제3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의 “제4장 지역발전과의 연계”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공공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책임관은 소관부서의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당해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부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공공데이터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앞의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삭제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총괄 검증·승인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및 소관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기별 현행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중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을 “시스템과 다른 공공데이터 관련”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역발전과의 연계

제23조(중전의 제22조) 중 “기업 및 단체,”를 “기업, 단체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적용범위)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p> <p>제12조(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u><삭제></u></p>
<p><u>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u></p> <p><u><신설></u></p>	<p>제13조(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공공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데이터책임관은 소관부서의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당해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부</p>

제13조(생략)

제14조(품질관리)① ~ ③ (생략)

<신설>

제15조(개방의 확대)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 ~ 제20조 (생략)

제4장 지역발전과의 연계

제21조 (생략)

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공공데이터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품질관리) ① ~ ③(현행 제14조 ① ~ ③항과 같음)

④ 공공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총괄 검증·승인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및 소관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기별 현행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의 확대) ----- 시스템과 다른 공공데이터 관련 -----

-----.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민간협력) -----

----- 기업, 단체 및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부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책임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책임관, 데이터정책 주무부서의 장, 정보화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1명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안전 등 필요한 경우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 삭제<2023. 8. 10.>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방의 확대)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교육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방법을 발굴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

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발전과의 연계

제21조(공공데이터 제공의 특성화)

- ① 도지사는 도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와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화된 데이터를 작성·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1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범위 확대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 규정을 신설함
 - 데이터 제공·관리를 위해 표준 매뉴얼 마련(안 제13조)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사업부서 자체작성 계획으로 비용 미발생
 -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대상사유서를 제출함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budget20@korea.kr)